

「과학기술정보 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및 기술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기술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의 과학기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에 우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질자원 및 과학기술정보 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및 공동대응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① 연구데이터 관리·공유·분석·활용체계 구축
- ② 빅데이터 처리·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 ③ 대용량 해양 지구물리탐사자료의 고속처리를 위한 KISTI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 ⑤ 상기 관련 연구성과 창출·홍보 및 교육, 세미나, 포럼 등 공동개최
- ⑥ 기타 상호 관심분야

제3조(실무자 지정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자를 지정한다.

② 실무자는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반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자료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공동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를 통해 조정하고 상호 합의된 결정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 업무협약 참여기관은 협약이행·교류·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 기관의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 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으면 본 협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7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업무협약 참여기관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5조(비밀유지) 이외의 업무협약 참여기관 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별도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8조(추가부분) 이 업무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본 협약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10일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원 장 김 복 철

김 복 철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www.kisti.re.kr

원 장 김 재 수

김재수